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79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장철민 · 허 영 · 김한규
채현일 · 최혁진 · 허성무
박용갑 · 송재봉 · 조승래
이재관 · 이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

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상공제부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u><신 설></u>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① (현행 제목 외 부분과 같음) ② 정부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하여야 한다.